

표지 면지

대부업TV광고 퇴출! 연대보증 금지

□ 프로그램 (2016. 7. 25. 14: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시간	내 용	비 고
14:00	행사 시작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김지희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14:03	대부업 대출 광고 시청	동영상
14:05	대부업TV광고 퇴출! 연대보증금지! 카드섹션	퍼포먼스
14:06	참석 국회의원, 단체 대표	인사말
14:15	대부업광고 피해사례 발표	김지희 사무국장 (주빌리은행)
14:25	대부업대출 연대보증 피해자 증언	증언 (주빌리은행 상담사례)
14:30	대부업대출 연대보증 피해 상담 사례 발표	김철호 대표 (민생네트워크 새벽)
14:35	대부업광고 규제와 연대보증금지에 관한 정책 제언	김준하 실장 (녹색소비자연대)
14:45	대부업TV광고의 실태와 현황	이윤소 사무국장 (한국여성민우회)
14:55	대부업TV광고금지3법+연대보증금지법 검토의견	김성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15:05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3법+연대보증금지법 소개	제윤경 국회의원
15:15	참석자 자유토론	토론
16:00	향후 공동 대응 합의	폐회

□ 대응 방향

-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여론화
- 대부업 TV광고 전면 금지 3법(대부업법, 여전법, 상호저축은행법)+연대보증금지법 통과 노력

Contents

● 인사말 i

피해사례

● **대부업광고 피해사례 발표** 1
김지희 사무국장 (주빌리은행)

● **대부업대출 연대보증 피해자 증언** 9
증언 (주빌리은행 상담사례)

● **대부업대출 연대보증 피해 상담 사례 발표** 15
김철호 대표 (민생네트워크 새벽)

정책제언

● **대부업광고 규제와 연대보증금지에 관한 정책 제언** 25
김준하 실장 (녹색소비자연대)

● **대부업TV광고의 실태와 현황** 33
이윤소 사무국장 (한국여성민우회)

참고자료

● **대부업TV광고, 여성대출 현황** 37

법안

●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3법, 연대보증금지법** 43

인사말



반갑습니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대부업 TV광고의 전면금지과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에 공동주최자로 함께 나서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부업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고리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고, 신라시대 문무왕은 사채소탕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꾸어준 쌀을 가을에 싼 이자로 되돌려 받는 빈민 구휼제인 환곡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악용되어 수탈제도로 변질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유재산이 등장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대부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부업 TV광고가 있습니다. 대부업 TV광고는 짧은 시간 동안 대부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보다는 ‘밝고 즐거운’ 이미지 생산을 통해 쉽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대출을 선택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업 TV광고 규제와 더불어 연대보증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자율규제 방식에 따라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대보증 책임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업TV광고를 전면금지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황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발표회가 그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대부업·연대보증의 실태를 밝히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윤관석**

인사말



많이들 지치셨죠?

TV에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대출광고 때문이에요.

행동경제학 실험에 의하면 사람은 돈을 연상시키는 정보가 주어지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화 한편을 볼 때마다 혹은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도 프로그램 시작 전 후는 물론이고 중간광고까지 돈 빌려쓰라는 광고가 우리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마치 아무도 몰래, 신용등급도 관계없이 친구마저 외면하는 돈 문제에 있어 대출회사들만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가 점점 팍팍해지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시도때도 없이 대출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집중적인 광고가 이뤄집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여성들이 추심에 쉽게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회수율이 좋다고 말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도 고금리 대출이란 급할 때 택시를 타는 사치 정도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 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빚을 갚는 이러한 광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신나는 수다, 돈 빌려쓰라는 광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짜증을 날릴 수 있는 즐거운 수다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 3법과 연대보증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 3법은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대부업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19대 때에도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캠페인을 벌여 일부 광고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낸적도 있습니다. 오늘 사례발표 시간을 통해 대부업TV광고 완전 금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금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행사에 함께해주신 윤관석 의원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녹색소비자연대, 여성민우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 **제윤경**

인사말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업 등의 대규모 부실 문제도 있고,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환경의 교란요인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최고 권력층은 추악한 부패의 냄새를 진동하며 자신들의 이권추구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대부업법 개정 얘기가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보다 더 오래되고 심각한 것이 민초들이 겪는 삶의 위기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있는 사람들에게는 안보도, 경제도, 정치도 다 소용 없습니다. 민생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국방이 튼튼한 것 같고 아무리 경제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정치가 안정되어 보여도 나라는 안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은 언제나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은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굴레입니다. 경제적 난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부족하고 고금리 대출의 유혹이 난무하는 사회는 참 나쁜 사회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위험천만한 대출을 달콤한 말로 포장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약탈적 대출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동원하여 제3의 피해자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야만적인 일입니다. 복지는 부실하고 규제는 허술하여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는 민생을 피폐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이 서로 괴리되는 모순을 낳은 것은 부실한 복지와 부실한 규제입니다. 오늘의 간담회가 이 모순을 해결하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빌리은행 대표 **유종일**

인사말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금융채무연석회의)는 현재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고금리 및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고금리 및 금융채무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의 공동연대체이며, 현재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가운데 빚이 있는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70%를 부채상환에 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 중 절반가량인 48.7%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비율이 평균 68.7%에 달합니다. 때문에 가난하고 빈곤한 채무자(금융피해자)는 어려운 생활을 하며 빚 상환에 허덕여 삶은 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대출과 연대보증의 문제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피해자들의 대부업의 고금리로 인해 가족의 해체의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번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과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과 연대보증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제도적 틀을 닦는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융채무연석회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서창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덕승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부업 TV광고 퇴출과 연대보증 금지”에 뜻을 함께 해주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의 대표님과 실무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1,224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위협요소인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법정최고금리가 27.9%인 대부업 대출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잔액 13조2,452억원, 대부업체 이용자는 267만9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달 이자만 상환한다면 한달 이자만 3,079억원, 1년이면 무려 3조6,954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대부업 이용자 또한 회사원이 67.9%를 차지하고, 대출목적은 64.8%가 생활비 용도라고 하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고금리 대출광고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전단지, 온라인, TV 광고 등 무차별적인 광고로 인해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TV에서 나오는 대부업 대출광고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누구나”, “쉽게”, “바로”, “단박”, “아무도 모르게”, 등의 단어를 통해 돈이 필요하면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대부업 대출을 받는 것이 마치 금융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 정작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고금리 대출로 인한 위험을

간과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연대보증제도 또한 금융권에서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13년 7월부터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규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대부업체는 공공연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고 채무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한 이후 동의를 유도하고 대출자가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폐지가 연대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민법 등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연대보증금지를 명시하여 것이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례발표회를 계기로 TV에서 무차별적으로 대부업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덕승**

더 고통스러운 빛과 부담의 세계,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제윤경 의원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윤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경제를 위해, 민생에서 핵심 문제인 가계 부채와 개인 빚, 서민금융 문제에 천착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좋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윤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어이없이 찬성해줌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최소 수백억을 날린 것을 밝혀내고, 남들은 논란이 심하다고 가지 말자고 해도,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들의 심란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곱창 집으로 달려가 상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의 편에 선 훌륭한 활동이 많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금융 정책, 금융기관 전반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기만의 논리가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서민들을 전국 곳곳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옥죄고 부당하게 빚으로 유인하고, 과중채무의 멍을 씌우는 대부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토론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의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대부업의 공적 공간에서의 광고, 그리고 연대보증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업 광고의 폐해와 위험성, 또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겠지만,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최악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의 폭리와 부당한 이자율,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것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대부법의 과장, 과잉 광고, 공적공간에서의 빚권하는 광고부터 근절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더욱 기쁜 것은 그동안 서민경제를 살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도와주신 제윤경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들, 그리고 함께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시민모임, 여성민우회, 주빌리은행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참여연대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금융권력 감시, 이자폭리 근절, 금융공공성 실현, 서민금융 보호, 서민가계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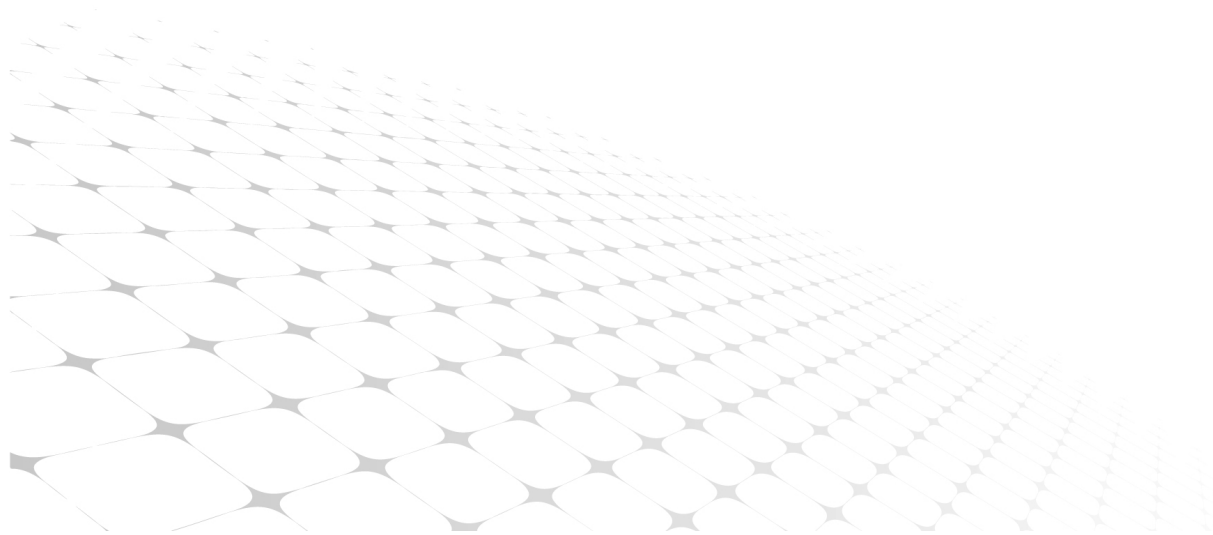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진걸**

피해
사례

대부업광고 피해사례

김지희 사무국장 (주빌리은행)



대부업 광고 피해사례

정부가 지난 7월 20일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들이 하루 커피 소비량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시행령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결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업 광고보다 커피우유가 더 위험하다는 억지주장을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미 무대리는 친숙한 캐릭터입니다. 산와머니 로고송을 따라 부르고, "썹썹"라고 이야기 하면서 일상적으로 대부업체 광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의거하여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파 방송만 보지 않고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IPTV 등 다양한 방송채널을 보고 있고 또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방송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대출광고 홍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2015년 7월 14일 기사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야구중계 시 40%가 대부업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시간 규제' 내달 시행...실태 보니

"본인 휴대폰이면 전화 즉시 대출 가능," "본인인증하면 바로 30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OO저축은행에서 대출 걱정을 날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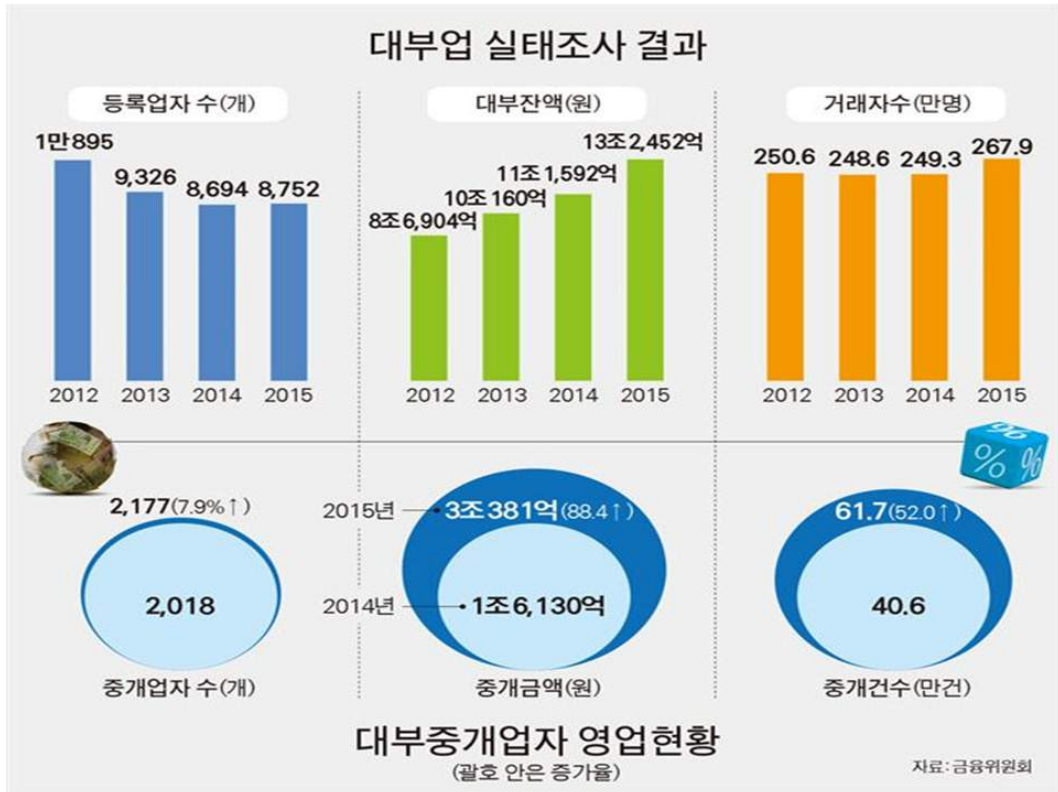
지난 9일 케이블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는 기아와 넥센의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했다. 양 팀의 공수가 교대될 때마다 이런 내용의 대출광고가 전파를 탔다. 3시간이 넘는 중계시간 동안 모두 81개 광고가 송출됐고, 이 가운데 33개(40.7%)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광고였다.

야구 중계때 40%가 대출광고

출처 : 한겨레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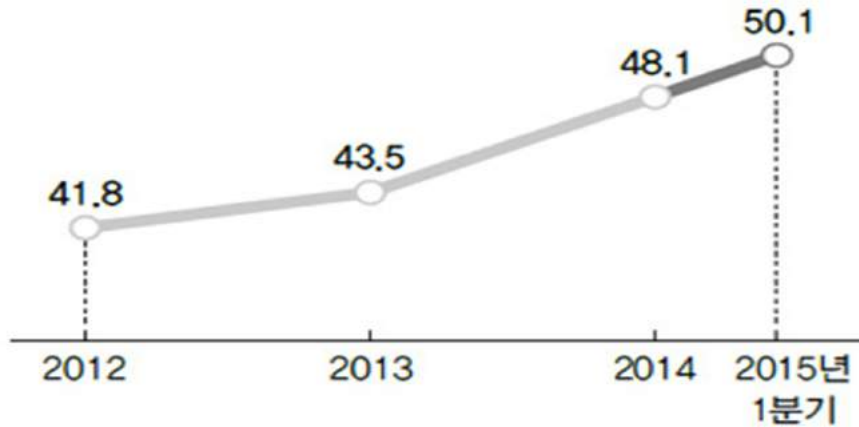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잔액은 13.2조원, 거래자수 268만명에 이르러 광고시간 제한 전인 상반기보다 각각 7.3%와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TV 광고를 줄여도 대부 중개업자에 의한 대출이 증가하는 등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광고 형태도 문제이지만 광고의 대상이 더 문제입니다. 대출 광고의 상당부분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 만들기도 쉽지 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6일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대부업체 12곳의 신규 대출 건수 21만1392건 가운데 여성 대출 건수는 10만5804건(50.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액 규모가 3521억7500만원에 달했다.

대부업체 신규대출 가운데 여성대출 비중 (단위: %)

※ 대부업체 12곳, 대출건수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이번 조사는 자산 기준 대부업체 상위 10곳과 여성 대출상품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는 3곳(1개업체는 중복)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조사를 통하여 여성 고객의 신규 대출 건수는 2012년 24만3400건(41.8%)에서 2013년 30만1972건(43.5%), 2014년 38만3998건(48.1%)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주빌리은행으로 상담을 문의하는 사례자들의 상당수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더 이상 갚을 수 없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채권 추심에 시달립니다.

제가 만난 30대 초반의 한 여성 사례자는 학자금 대출을 4년간 받아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로 있다가 얼마 전 국민행복기금에서 학자금 대출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싶어서 대출조정을 받기 전에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여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총 9건의 신용대출이 생겼습니다. 학자금 규모의 절반가량임 1500만원을 신용채무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율은 모두 35%가 넘었습니다. 월 150만원 남짓 버는 데 매월 120만원을 금융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원금 상환은 1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빚을 갚기 위해 이 사례자는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연체를 이하면 직장으로 집으로 추심원이 찾아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대부업 대출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용도가 없었고, 이미 광고를 통해 쉽게 바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여성대출이라고 하기에 의심없이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지식이 부재했던 탓에 35%의 이율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도 몰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자라서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남자보다 더 쉽게 대출하다고 현혹하지 마십시오. 한창 행복하고 즐거운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돈에 쫓기어 삶이 부서진 사람들에게 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방송에서라도 대부업 광고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2013년 이미 대부업 광고 퇴출 시민의 날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방송법에서 시간을 정하여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발달로 광고를 내보내는 채널은 다양해져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이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달콤하게 다가오는 대부업 광고. 그 유혹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대부업 광고 퇴출입니다. 이번 제윤경 의원실에서 발의하는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금융환경이 약탈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약탈적 금융사회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연대보증의 굴레

속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증서면 패가망신한다.", "돈을 주는 한이 있어도 절대 보증서지마라."

이런 말이 왜 생긴 것일까요? 그만큼 보증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로 스타덤에 오른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올 초에 매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박보검이 파산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십대 초반의 배우가 파산이라는 것도 의아했고, 한참 유명세를 치르는 중에 보도된 내용이라 네티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민법[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민사]미성년자의 연대보증과 박보검 케이스|**작성자** 당신의 변호사 홍지혜

미성년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연대보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보증행위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박씨 사건은 미성년자라도 '연대보증의 늪'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5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연대보증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박씨는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박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형식이어서 일단은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한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부터 정부가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박씨가 보증을 섰던 2008년에는 가능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도 없었습니다. 박보검이 갚을 능력이 없다며 바로 파산신청을 하자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뒤 파산절차를 진행하다 박보검이 '동시에 의한 파산폐지' 신청을 했고 채권자인 대부업체 동의로 종결했습니다. 파산절차를 끝까지 밟지 않고 채권자 동의를 얻어 일부금액만 갚는 선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한편 대부업체가 낸 소송은 결국 박보검이 공동 피고에서 빠진 상황에서 올해 1월 대부업체 승소로 판결됐습니다. 이자 등을 합쳐 금액은 8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연대보증으로, 쉽게 생각하면 새로운 채무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금융권의 개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일부 폐지되긴 했지만 개인 간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된 게 아니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 등 채무자들에게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개선이 일부 있었지만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3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3주간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금감원이 각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2월말 기준 전체 대출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4만5971건(전체 조사대상 계좌의 0.8%)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9885억원에 달했습니다. 연대보증은 2013년 7월부터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호금융회사들이 아직도 대출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출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끼기'도 1만5008건(32.6%) 적발됐습니다. 특정 대출이 아닌 금융회사와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은 1만1302건에 달했다. 끼기와 포괄근저당은 각각 2011년, 2013년부터 금지돼 왔습니다.

불건전영업행위^주 의심거래 점검결과

(단위 : 건수, 억원)

구분	구속성영업행위	포괄근저당	연대보증	전체 의심거래	전체 조사대상계좌
건수	15,008	11,302	19,661	45,971 (0.8%)	5,464,556 (100%)
금액	46	6,534	9,885	16,465 (0.6%)	2,592,822 (100%)

주 : 구속성영업행위는 상품가입 건수 및 금액기준, 포괄근저당, 연대보증은 대출계좌수 및 잔액기준

금감원은 2013년 7월부터 금지된 연대보증에 대해 이 시점 이후 신규 취급건은 모두 해지하고 신용대출로 전환토록 조치했습니다. 그 전에 취급된 계약은 연대보증 조건 계약을 변경하거나 2018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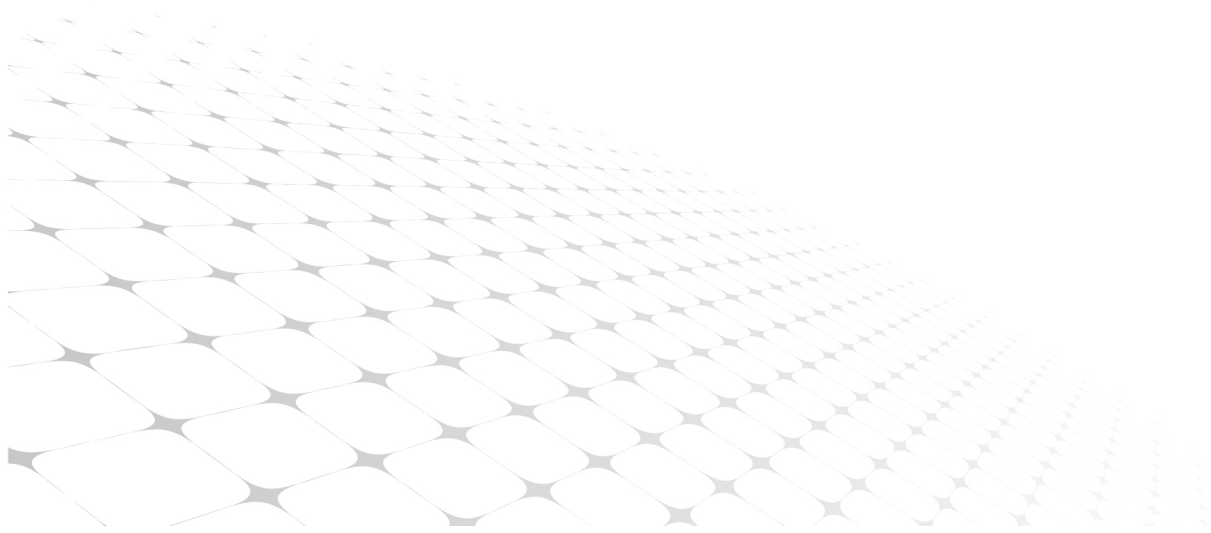
포괄근저당의 경우 특정 종류 대출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특례 조상 신설해 농협·산림조합 방법서에 넣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포괄근저당이 한꺼번에 해소돼 대출자가 예상 못한 담보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금감원은 다만 출자금,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데 '끼기'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 불편함을 초래한 만큼 규제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최근 1개월 안에 가입한 예적금이나 공제 등을 중도해지해야 했습니다.

피해
사례

대부업대출 연대보증 피해자 증언

증언 (주빌리은행 상담사례)



보증채무의 억울함에 따른 해결 요청

(보증 경위)

1. 저는 조상때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훈장까지 받으면서 평온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오던 중, 국도변에 저의 명의로 된 토지 6,000평 처 명의로 된 토지 1,000평 합계 7,000평이 있었는데 1996년도 7월경 평소 알지도 못하던 이국남(채무자)씨가 휴게소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여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만 받고 잔액은휴게소 준공 후 받기로 하며 토지를 선 담보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2. 신일 상호금고에서 2억6천만원를 담보제공 하면서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고 하여 부부 명의로 되어 있어 할 수 없이 신일금고까지 1시간30분 걸리는 장거리를 가서 대출서류의 중요한 사항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 날인만 해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여러장 다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3. 나중에 알고 보니 2부 작성된 서류가 한달 후 1억5천만원의 대출 보증으로 추가되었고 결국 4억1천만원의 대출보증을 부부가 꼼짝없이 연대보증 서게 되었습니다

(부도위기 사유 및 대처 행위)

1. 휴게소만 준공되면 25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 큰 근심없이 매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데 휴게소 공사 중 IMF가 터지면서 계획대로 일이 안되자 부도 상태에 있다가 제3의 건축업자를 채무자 이국남이 영입하여 외상공사로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IMF 여파인지 매매가 잘 안되고 이자는 고금리로 치솟으며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급매물로 싸게 팔 것을 이국남에게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2. 할 수없이 채권 금융기관에다 제가 담보 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휴게소를 경매하여 채무를 회수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고(붙임 1) 경매할 의사가 없다고 내용증명으로 회신이 와서 (붙임2) 다시 연대보증인을 교체해 달라고 내용증명 몇차례 보냈습니다(붙임3)
3.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고 상환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제공된 토지가 임의경매 되고 다른 토지에도 강제경매 되었으며 채무자 이국남은 **파산 면책**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갔고 결

국, 저는 보증채무 및 이국남 대출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문의 제기)

* 연대보증 대출금 내역

- 담보대출 260,000,000(신규일 96.07.24 / 만기일 98.07.24)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

- 신용대출 150,000,000(신규일 96.08.28 / 만기일 98.08.23)

연대보증

1. 연대보증 신용대출금 150백만원 (신규일 96.8.28 / 만기일 98.8.23)
(의문) 본 대출이 담보대출 보증인지 신용대출 보증인지 전혀 설명이 없었고 96.07.24 은행 방문시 서류 주면서 사인해 달라고 해서 서명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2. 위 대출금 만기일(98.07.24일 및 98.08.23일) 이후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동 대출에 대한 **연장 동의나 기타 다른 절차**가 전혀 없었고 그렇다면 기한이익 상실된 연체대출금 상태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만기일 이후 **총4건 338,480천원**의 추가 대출이 되었음.
 - * 99.07.08일 내용증명우편 : 보증인 교체 요구 (붙임1)
 - * 99.07.27일 내용증명 우편: 연대보증에 대한 이의 제기(붙임2)
 - * 99.12.15일 신용금고로부터 답변 받음 : 대출연장이 안되고 있으며
경매는 할 수 없다고 답변 받음(붙임3)
3. 이렇게 잘 못된 대출금을 경매 배당금으로 충당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보증인인 저한테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저의 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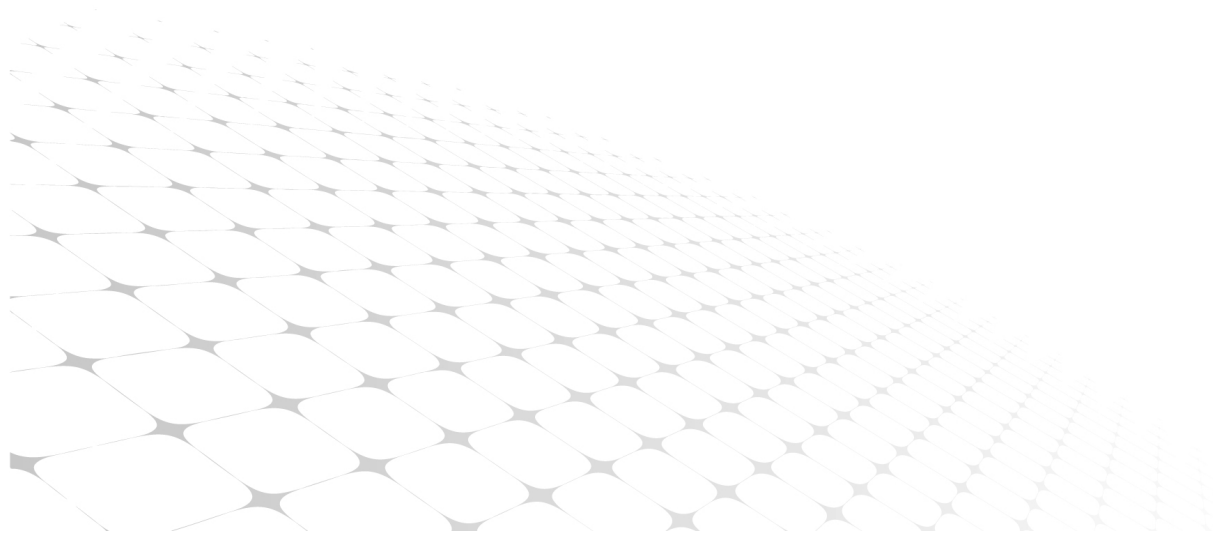
1.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오면서 대출보증 및 담보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서류도 사인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이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땅까지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2. 주 채무도 아니고 보증채무로 20여년간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정신적 고통과 노후까지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3. 바라옵건데 제 나이 70에 이르렀습니다
나이들어 경제적 활동도 어렵고 겨우 농사일에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억대의 보증금액을 상환하라고 하니 도저히 살길이 없습니다.
제발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피해
사례

대부업대출 연대보증 피해 상담 사례 발표

김철호 대표 (민생네트워크 새벽)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대부업체 피해 1

-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 -

신청인은 1972년 충남 00에서 0남 0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농사를 지으셨는데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청인은 선천성 지적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00여중을 졸업하는 것으로 모든 배움을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시골집에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22무렵 언니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서 옷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후 0000년 대전으로 내려와 장갑을 만드는 작은 가내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0000년, 아는 사람의 중매로 남편 백승익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용건축노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아들이 선천적인 지적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장애교육비 등 많은 생활비가 들어갔고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생활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이 2002년 지적장애1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은 동구청으로부터 장애아양육수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구청에서는 신청인과 남편이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 - 2011년

그러다가 2009년, 신청인은 다니던 교회권사님의 안내를 받아 장애인단을 신청했고 지적장애3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 가족은 동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구청에서는 신청인의 남편이 돈을 번다며 신청인가족에게 생계비를 한 푼도 책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인의 가족 4식구는 남편의 평균 소득 120만원, 구청에서 지급하는 아들의 장애양육수당 20만원, 그리고 신청인의 장애수당 3만원 등 총143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결혼 전에 마련해 놓은 아파트가 있어서 주거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명의의 아파트에 4500만원의 담보대출이 있어서 매월 이자가 월세처럼 나가야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신청인은 늘 생활비에 쪼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 초, 신청인

은 TV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짠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신청인 TV광고를 믿고 '산와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산와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대출받은 돈으로 여기저기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급한 생활비로 빌려 쓴 작은 빚들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얼마는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매달 내야하는 비싼 대출금 이자와 상환금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TV 광고에서는 이자가 아주 싸다고 했는데 매달 십 수 만원씩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일용노동별이가 월 120만원 남짓이라서 평소 생활하기에도 힘이 들었는데, 매달 십수만원의 상환금을 마련하려다보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다 월 납입금을 내지 못 하게 되면 다음 달에는 훨씬 더 많은 납입금을 내야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산와대부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빚발치는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남편이 알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그렇다고 이실직고할 용기도 없어서 혼자서 속을 끓였지만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용이 없어도 아무런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신청인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전화를 돌려 대출알선업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신청인은 '밀리언캐쉬대부'라는 업체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금 200만원이 입금되던 날, 대출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 밀리언캐쉬대부 대출수수료와 또 다른 대출을 위한 알선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신청인은 빨리 더 대출을 받아서 산와대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부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산와대부의 밀린 상환금을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서울의 대출알선업자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봐도 없는 전화번호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산와대부 대출금을 갚기는 커녕 매달 더 많은 이자와 상환금을 내야 했습니다. 신청인은 빠듯한 가정경제상황에서 남편 몰래 많은 이자와 대출상환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경제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신청인은 교차로 신문을 뒤져 대출광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출알선업자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알선업체에서는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며 신청인 명의의 은행통장을 만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신한은행통장과 창신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어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011년 2월, 신청인은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롯데캐피탈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업자는 신청인에게 사무실로 와서 함께 돈을 찾자고 했습니다. 신청인은 대출업자 사무실로 가서 대출업자와 함께 돈을 인출했습니다. 대출업자는 대출수수료 및 또 다른 대출을 위한 알선료가 필요하다며 대출금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신청인은 롯데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 중 절반이상을 대출알선업자에게 갈취당하고 남은 돈으로 밀린

대출금이자와 상환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출알선업자는 시티캐피탈에서 7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청인은 대출업자와 함께 돈을 찾았고 대출알선업자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2011년 4월 대출알선업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알선업자가 대부분의 돈을 가져갔고, 나머지 얼마 신청인에게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그 돈으로 일부 대출금이자와 상환금을 변제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이자와 상환금독촉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출알선업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사무실로 찾아가 보았으나 대출업자는 간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들여주는 돈의 대부분을 대출이자와 상환금을 막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정살림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청인은 핸드폰 비용을 못 내서 핸드폰 상용이 정지되었고 많은 요금 미납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핸드폰 비마져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남편의 핸드폰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신청인의 채무를 알게 되었고,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신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김수경 사례관리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김수경 사례관리사는 여기저기 여러 단체와 연계상담 끝에 '민생상담네트워크새벽'이라는 단체와 연계상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남편과 함께 '새벽'에서 신청인은 채무에 관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통하여 신청인은 법원의 '소송구조'라는 절차를 통하여 개인파산면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구조를 통하여 이종명변호사를 소개받아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 신청인은 3급 지적장애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아들 딸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선천성 1그1 지적장애자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는 신청인의 남편이 노동능력이 있다며 수급비를 책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의 4식구는 남편의 일용노동별이 120만원, 아들의 장애양육수당 20만원, 신청인의 장애수당 3만원 등 총 143만원으로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청인의 가족은 주거에 대한 걱정만큼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결혼 전에 장만해 놓은 42㎡ 소형아파트입니다. 남편은 이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4500만원의 담보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아직 그대로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 신청인가족은 현재의 소득만으로도 그럭저럭 생계를 꾸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교회와 친지들로부터 아이들 옷가지며 신발이며 식료품 등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어리석고 모자란 행위로 말미암아 신청인가족의 평온한 일상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청인의 현재의 심정은 그저 죽고만 싶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선천적인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과 어린 딸을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발, 신청인과 신청인가족을 살려 주십시오. 신청인이 멋모르고 저질러 놓은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신청인의 남편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평생일용노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신청인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의 아버로써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손 모아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신청인 000 올림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대부업체 피해 2

-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 -

신청인은 부산에서 0남0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대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는 사진관을 하셨는데 신청인이 중학교 때 일찍 세상을 뜨셨고 어머니가 일용노동을 하시며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대천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모든 배움을 마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인은 대전으로 나와 일용노동을 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왔고, 책 외판원을 하기도하고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91년, 신청인은 아내 000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2녀 1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후, 신청인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 바람에 신청인은 힘든 노동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1997년 무렵 만화방을 열었습니다. 만화방은 IMF경제 한파 속에서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신청인은 만화방이 호황일 때 만화방을 정리하고 중고가전제품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가전제품시장도 IMF 경제 한파가 극복되면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 무렵 신청인에게는 장가를 못간 남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여러 가전회사들의 에어컨제품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 신청인의 집에서 함께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동생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남동생명의의 빗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동생은 '바다이야기'라는 성인도박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청인은 대전시내의 성인도박장을 찾아다며 남동생을 잡아오는 것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청인은 남동생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게임장으로 남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동생은 막 돈을 따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역시 그 날 돈을 땀습니다. 그 이후, 참으로 한탄스럽게도 신청인마저 성인도박게임에 빠져 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청인은 성인도박게임인 '바다이야기'에 빠져 많은 돈을 탕진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을 모두 털어 신청인의 빚을 갚아주다가 모자라, 여기저기 친지들에게 많은 사채를 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중고가전제품가게는 신청인의 무관심으로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중고가전가게를 접고 신청인의 큰누님과 함께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다시 이곳저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 2011년

신청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녁이면 성인도박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신청인은 2009년부터 '에이애포파이낸셜대부'에서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애포파이낸셜대부'에서는 신청인에게 '무카드'라는 대출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무카드'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한도만큼 돈을 빼 쓸 수 있는 고리의 '대출카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에이애포파이낸셜대부'로부터 총 8600여만원의 빚을 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신청인은 '에이애포파이낸셜대부'업체 6,853,974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아내는 신청인의 채무변제를 돕는 과정에서 누님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 운영에도 적잖이 피해를 주었던 같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와 누님은 식당도 폐업하게 되었고, 아내는 학교식당의 조리사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뒤치다꺼리에 지친 아내가 신청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신청인도 더 이상은 아내와 아이들을 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8월, 신청인은 아내와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신청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신청인이 큰 딸아이를 양육하고, 아내가 나머지 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아내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법정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 혼 후에도 성인도박게임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애포파이낸셜대부'에 대부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신청인은 급한 대로 신용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대부금을 갚기도 하고, '무카드'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꼬박꼬박 지급하다 보니 빚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전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800만원, 신라저축은행에서 800만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200만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서 300만원 등을 대출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대출한 돈으로 채무둘러막기 변제를 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현재의 상황

2010년 08월, 신청인은 이혼을 한 후 아내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쫓겨나와 갈 곳이 없었던 신청인은 직장이었던 아파트관

리소 숙직실에서 숙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인이 양육하기로 합의한 큰딸 아이도 아내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가 2012년 초, 신청인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녀들을 만나 함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울면서 “아빠, 이제 제발 도박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내가 도박을 끊지 않으면 영영 아이들과도 남남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은 성인도박게임장 출입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3월, 남동생이 신탄진에 작은 빌라주택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주고 임대할 때, 신청인도 큰딸아이와 함께 주거를 옮겼습니다. 신청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지만 개인용품을 보관하거나 가끔씩 빨래를 할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한편 큰딸아이는 공고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매월 176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인은 매월 자녀들의 양육비로 80만원,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노모께 2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싼 이자와 대출상환금을 감당하지 못해 계속해서 빚이 늘어 왔습니다. 이제, 신청인은 더 이상은 비싼 이자를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잖아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그래서 청인은 고심 끝에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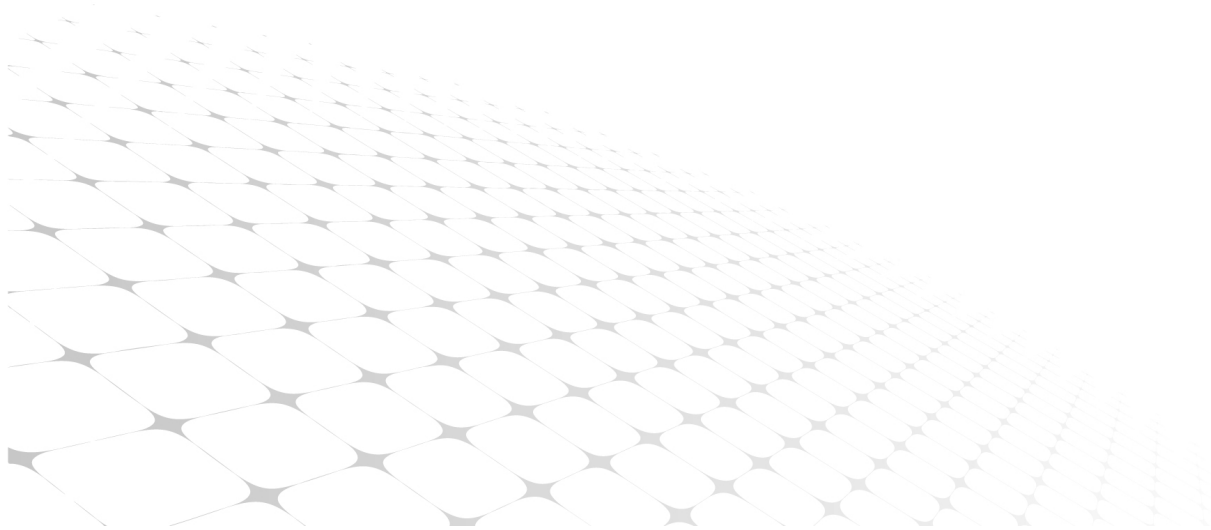
현재, 신청인은 어린 자녀들과의 삶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뼈를 깎는 인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청인의 소득상황으로 볼 때,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이야말로 마지막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청인과 신청인자녀들이 하늘이 맺어 주신 천륜관계를 저버리지 않도록, 모두 함께 미래의 희망을 바랄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손 모아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신청인 000 올림

정책
제언

대부업대출광고 규제와 연대보증금지에 관한 정책 제언

김준하 실장 (녹색소비자연대)



대부업대출광고 규제와 연대보증금지에 관한 정책 제언

김준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실장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소비자상담센터 1372 접수된 대부업관련 상담 사례

2010.1.1.~2012.12.31. 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사채)업체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현황을 보면 상담 3,797건, 피해구제 32건이 접수되어 한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접수내용은 ▲대출금 상환거부 ▲부당한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계약과 달리 높은 이자나 과도한 연체료 요구 ▲개인정보 유출 등 부당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건)

구분	상담	피해구제	계
2010	1,117	14	1,131
2011	1,491	14	1,505
2012	1,185	4	1,189
계	3,793	32	3,825

사례1 (경상북도 / 남성)

“대부업 TV대출 광고는 심사없이 바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광고내용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문의하게됨.

사례2 (경기도 / 남성)

1년전 대부업체에서 지인이 대출을 받음. 대출 당시 연대보증을 했는데 녹취록으로 동의를 하였으나, 정작 계약서 사인인 지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사인을 하였음.

사례3 (경기도 / 여성)

36세의 아들이 친구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하여 전화로만 승낙하였고, 이후 서류작성 등은 없었음. 대출액은 2곳의 회사에 4,000만원인데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아들에게 독촉장이 날라옴

사례4 (대구 / 여성)

남편의 친구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대부업 중개업자가 남편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요청하여 함께 동행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계약서 작성당시에 연대보증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참고인이라고 설명하여 서명함. 이후 친구가 대출이자를 3개월동안 갚지 않아 연체되자 집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문' 우편으로 배달됨.

소비자 90% 금융광고 '문제있다'..가장 큰 문제는 '대부업'

금융연구원이 2014년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20세에서 5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8월 발표한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경험·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이 금융광고가 너무 많고,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많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문제가 있는 광고업종으로 대부업체를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는 금융광고가 많다고 생각했으며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90.4%나 됐다. 다른 상품 광고에 비해 금융광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47.5%에 달했다.

문제점으로는 ▲주요 정보의 누락 또는 은폐(43.8%) ▲유명인 동원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 흐림(31%) ▲사은품 제공으로 금융상품 구매 유도(15.8%) ▲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 불가(7%) 등이 지목됐다.

금융당국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걸러내도록 했지만, 여전히 '단박에' '쉽고 빠르게' 대출 광고홍수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어린이, 노약자들이 저금은 은행에 하고 대출은 대부업체에서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라며 “대부업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박’ ‘쉽고 빠르게’ 등의 문구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협회에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도 이러한 대부업 광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1372 소비자콜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대부업 TV대출 광고는 심사없이 바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광고내용 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문의로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 류지영의원에 따르면 대부업 TV광고는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케이블TV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총 75만7812건으로 하루 평균 1364건에 이른다. TV광고를 하는 대부업체가 최대 9군데 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1개 대부업체당 무려 151건의 대출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대출잔액과 대부업 이용자,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

2015년말 기준 TV 광고를 하고 대부업체 3곳(러시앤캐시,산와머니,웰컴론)의 대출잔액은 4조9,038억원으로 전체대부업 대출13조2,452억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한해 이자수익은 1조4,817억원, 영업이익은 3,210억원에 달한다.

이들 3곳의 대부업체의 광고비는 2014년 558억원에서 2015년 405억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집행하고 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을 늘리면서 2014년 지급수수료 지출 709억원에서 2015년 891억원으로 늘어났다.

〈표〉 주요대부업체 대출잔액 (단위:억원) - 금감원 전자공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앤캐시	14,861	19,436	24,431	24,324
산와대부	12,099	12,731	15,581	19,846
웰컴크레디트	4,805	5,031	4,973	4,868
계	31,764	37,197	44,985	49,038

〈표〉 주요대부업체 이자수익 (단위:억원) - 금감원 전자공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앤캐시	5,571	5,349	7,163	6,993
산와대부	4,552	4,440	4,864	6,240
웰컴크레디트	1,871	1,558	1,689	1,585
계	11,994	11,346	13,716	14,817

〈표〉 주요대부업체 영업이익 (단위:억원) - 금감원 전자공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앤캐시	1,117	1,220	1,493	1,195
산와대부	1,594	1,825	1,902	1,539
웰컴크레디트	376	506	375	476
계	3,087	3,550	3,770	3,210

〈표〉 주요대부업체 광고선전비 (단위:억원) - 금감원 전자공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앤캐시	142	380	355	263
산와대부	606	484	103	89
웰컴크레디트	73	96	100	52
계	821	961	558	405

〈표〉 주요대부업체 지급수수료 (단위: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앤캐시	206	228	292	257
산와대부	29	43	287	479
웰컴크레디트	174	143	129	161
계	409	415	709	896

대부업체는 대부업 광고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공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광고, 담배광고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정크푸드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도 ‘유희주점’, ‘도박’, ‘조제분유, 젓꼭지, 젓병 등의 제품’, ‘담배 및 흡연 광고’,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광고’,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2012년까지 수돗물 정책을 위해서 TV에서 먹는샘물 광고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주류광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담배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열량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광고 규제 및 제한

연대보증은 없어야 할 제도

금융당국은 2013년 7월부터 제2금융권은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고, 대부업체 또한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연대보증은 유효하고 다수의 대부업체 또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참여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보증을 폐지한 금융기관들도 기존 연대보증은 유효한 만큼 기존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법률상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대부중개업체 등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고 채무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대보증을 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연대보증 계약을 유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증인을 속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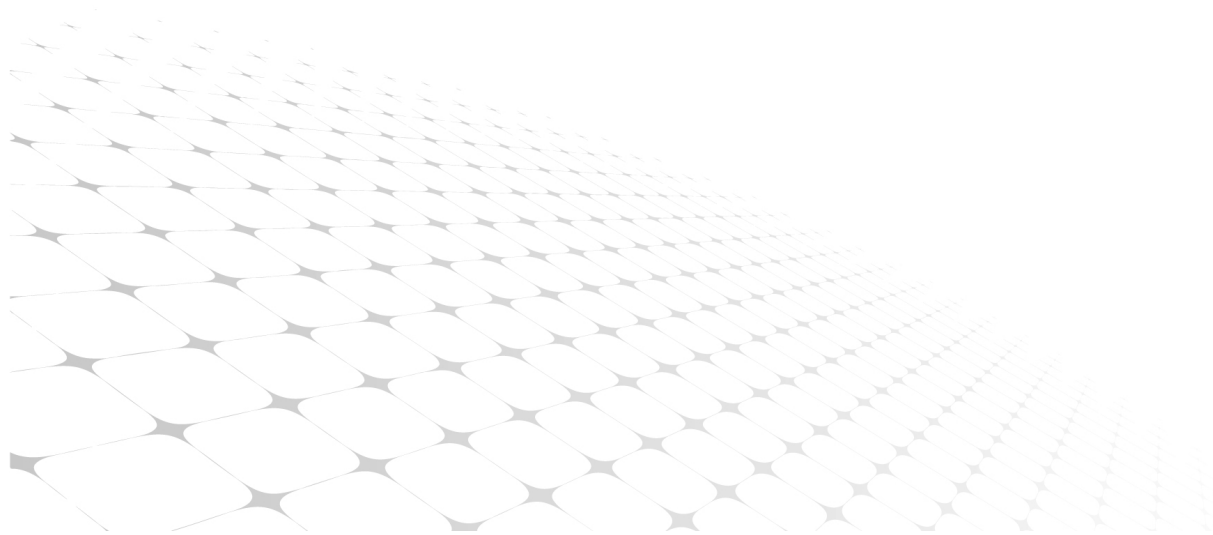
보증인이 전화로 보증확인을 하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이후 말을 바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보증인 측에서 이같은 보증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부업체들은 보증서류에 서명날인했다는 녹취를 증거로 보증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압박한다.

이처럼 자율규제만으로는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의 폐지가 어렵고, 심지어는 법률을 잘 모르는 소비자를 속이기 까지 하는 등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연대보증 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정책
제언

대부업 TV광고의 실태와 현황

이윤소 사무국장 (한국여성민우회)



대부업 TV광고의 실태와 현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이윤소 사무국장

대부업 광고는 과거에는 전봇대나 지하철역 등의 공간에 게시되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2002년 대부업이 법적으로 양성화된 이후로 TV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시 가계부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출받은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 중 TV광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대부업 TV광고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업 TV광고는 이처럼 대부업계에도 큰 이윤을 가져다주지만, 방송사들 또한 대부업 광고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의 경우 2006년까지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대부업 광고를 했습니다. 2006년 한해 대부업 광고를 통해 KBS 16억, MBC 10억, SBS 9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¹⁾ 그러나 고금리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2007년부터 지상파 3사는 대부업 광고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광고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절을 선언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지상파에서 사라진 대부업 TV광고는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 및 OTT 서비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류지영 의원이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로부터 받은 '주요 방송사업자의 대부업 광고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모두 75만7812건으로, 하루 평균 1188건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²⁾ 실로 엄청난 양의 대부업 TV광고가 방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TV광고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 TV광고는 이들의 주요 수입처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업 TV광고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여, 2013년에는 대부업 TV광고를 축소 및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TV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방

1) <앞에선 '대부업 폭리' 비판·뒤로는 광고수익> (2007년 6월 12일, 미디어오늘)
2) <하루 1188건...대부업 TV광고 단박에 줄어들까> (2015년 4월 29일, 한겨레)

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의2³⁾에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이학영 의원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예 대부업 TV광고를 금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였지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부업 TV광고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인 대부업체 및 대부광고가 허용되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티브이 회사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대부업 TV광고의 축소와 금지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TV광고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대부업 TV광고의 문제점으로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TV광고에서 소비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TV광고에 노출될 경우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프로그램 내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대부업체가 드라마 배경 및 주인공의 직장으로 등장하거나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심각한 피해는 가려진 채 좋은 면만 부각될 것입니다. TV광고로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 광고가 아닌 프로그램 내 광고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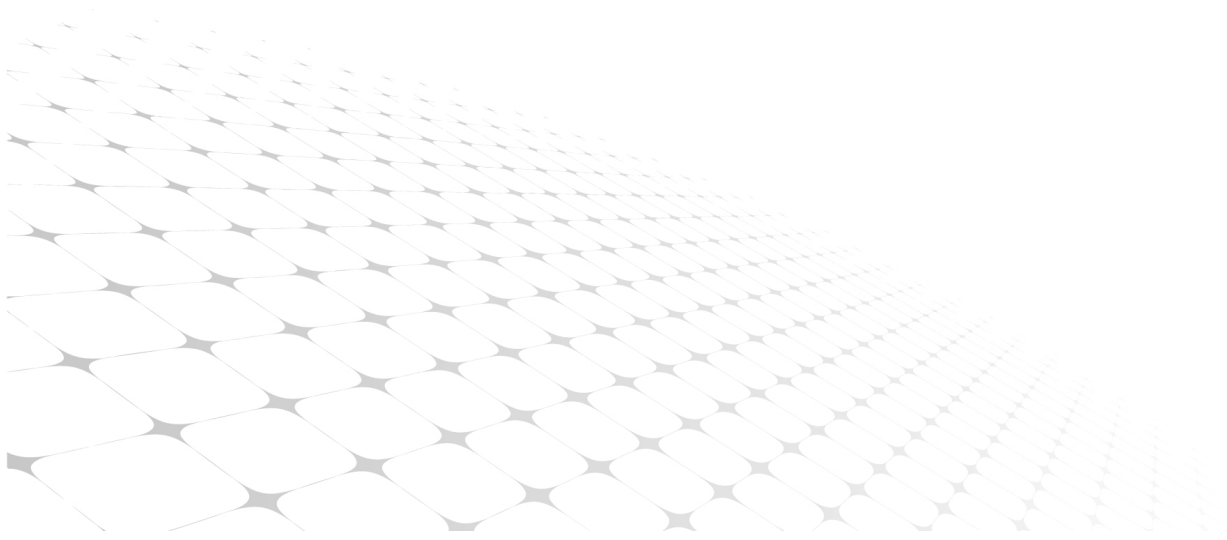
다행스럽게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려던 대부업 TV 간접·가상 광고 허용안은 철회되었습니다. 대부업 TV광고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너무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대부업 TV광고가 폐지된다면 TV광고를 통해 손쉽게 대부업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업 TV광고와 함께 경제적 약자 특히 여성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3) 제43조의2(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①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0.8>
2. 대부업 <신설 2015.10.8>
가. 평일 : 07:00 - 09:00, 13:00 - 22:00
나. 토요일·공휴일 : 07:00 - 22:00

참고
자료

대부업TV광고, 여성대출 현황



대부업TV광고, 여성대출 현황

[표 1] 대부업체 대출 현황

(단위: 억원, 만명)

구분	'14.12말	'15.6말	'15.12말
대부잔액	111,592	123,401	132,452
거래자수	249.3	261.4	267.9
평균대부금	448만원	472만원	494만원

〈출처 : 금융감독원〉

[표 2] 5대 대부업체 대부잔액적용금리현황(기준일자:2016.05.31.보유잔액기준)

(단위: 억원, 명)

업체명	구분	적용금리					소계	이자 평균
		49%이하	44%이하	39%	34%	27%		
5대 대부업체*	대부잔액	0.03	0.4	7,498	34,398	13,263	55,159	33%
	거래자수	1	20	203,620	832,847	280,531	1,317,019	
	이자액	0	0.2	2,925	11,696	3,581	18,200	

*5대 대부업체 :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트인대부
 〈출처 : 서울시자료 제윤경의원실 재구성〉

[표 3] 대부업체별 TV 광고횟수 현황*

(단위 : 회)

업 체 명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78,029	147,210	152,074	115,887	39,541
산와대부	26,004	34,836	97,780	51,444	3,598
웰컴크레디라인대부	24,441	92,562	96,090	32,359	8,809
리드코프	54,673	65,391	63,353	82,594	33,899
바로크레디트대부	-	-	85,392	54,781	14,356
미즈사랑대부	12,470	64,045	70,495	67,543	32,644
스타크레디트대부	-	-	5,174	20,216	4,856
위드캐피탈대부	-	10,265	7,374	607	-
인터머니대부	-	3,751	14,153	5,102	-
합 계	195,617	418,060	591,885	430,533	137,703

* 해당기간 중 TV 광고(공중파, 케이블, 종편) 방영 횟수의 합계 〈출처 : 금융감독원〉

[표 4] 5대 대부업체별 광고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7,638	17,061	19,403	14,582	5,682
산와대부	1,483	3,166	9,388	8,936	2,017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0,297	12,627	12,779	9,389	5,022
리드코프	7,619	8,793	9,215	10,625	3,436
미즈사랑대부	1,665	6,820	10,375	9,540	3,960
바로크레디트대부	130	12	9,370	9,679	4,579
스타크레디트대부	-	228	3,329	5,801	2,077
위드캐피탈대부	147	2,655	2,416	842	51
인터머니대부	-	614	2,221	2,920	749
합 계	27,167	41,659	60,155	53,211	20,736

* TV 광고, 온라인, 신문 등의 광고지출 비용 합계 <출처 : 금융감독원 자료 제윤경의원실 재구성>

[표 5] 상위 10대 대부업체 여성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대부업체명	구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6월말
상위 10개 대부업체	잔액(a)	1,966,760	2,329,952	2,631,725	2,909,651	3,064,149
	이자율 ²⁾	-	-	-	-	-
	회수금액(b) ³⁾	980,346	1,095,960	1,231,789	1,388,051	727,973
	거래자수	709,673	731,569	788,439	827,351	829,034
	회수비율(b/a)	49.8	47.0	46.8	47.7	23.8

* 상위 10개 대부업체 :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미즈사랑대부, 웰컴크레디트대부, 태강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애니원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출처 : 금융감독원>

[표 6] 상위 5개 대부업체* 여성대출 거래자 비중(단위: 명)

구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여성거래자	588,256	595,776	654,090	668,615
전체거래자	1,249,056	1,243,499	1,314,628	1,318,844
여성 비중	47.1%	47.9%	49.8%	50.7%

* 상위 5개 대부업체 :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웰컴크레디트대부 <출처 : 금융감독원>

[표 7] 대형 대부업체 주부, 전체 신규대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대부목적					합계	'15.12월 비중(A)	'15.6월 비중(B)	증감 (A-B)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주 부	1,711	143	169	16	214	2,253	8.1%	6.8%	1.3%p
전 체	18,091	3,738	2,281	394	3,435	27,939	100.0%	100.0%	-

* 신규대부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개인대부 취급 위주 72개사의 '15년 하반기 중 신규대부액 기준
(출처 : 금융위원회)

법안

대부업TV광고전면금지3법,
연대보증금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7. 25.

발 의 자 : 제윤경의원

찬 성 자 : 제윤경, 박경미, 노회찬,
박광온, 우원식, 박재호,
김병관, 최인호, 손혜원,
유승희, 안규백, 박홍근,
어기구, 윤관석, 문미옥,
오제세, 정성호, 강병원,
박용진, 설훈, 전해숙,
김현권, 김경협, 남인순,
신창현, 양승조, 김현미,
황희, 김영주, 진선미
의원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임.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체 대출 관련 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3. 그 밖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송출되는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대부조건외의 게시와 광고) ① ~ ④ (생략)</p> <p>⑤ <u>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u>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u></p> <p>2. <u>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u></p>	<p>제9조(대부조건외의 게시와 광고)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p> <p>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p> <p>3. 그 밖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송출되는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p>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7. .
 발 의 자 : 제윤경의원
 찬 성 자 : 제윤경, 박경미, 박광은,
 우원식, 박재호, 김병관,
 최인호, 손혜원, 유승희,
 안규백, 박홍근, 여기구,
 윤관석, 문미옥, 오제세,
 정성호, 강병원, 박용진,
 설훈, 전해숙, 김현권,
 김경협, 신창현, 양승조,
 김현미, 황희, 김영주,
 진선미 의원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임.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역시 TV 광고방송을 통해 대출상품을 노출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품의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거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5제 3항 신설).

법률 제 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출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3. 그 밖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송출되는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제4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5제4항에”를 “제18조의5제5항에”로 한다.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상품에 대한 광고를 한 상호저축은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③·④ (생 략)</p> <p>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 (생 략) <u><신 설></u></p> <p>6.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p> <p>7. ~ 13. (생 략) ② ~ ④ (생 략)</p>	<p>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출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3. 그 밖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송출되는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40조(과태료)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상품에 대한 광고를 한 상호저축은행</p> <p>6. 제18조의5제5항에----- ----- -</p> <p>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7. .
 발 의 자 : 제윤경의원
 찬 성 자 : 제윤경, 박경미, 박광운,
 우원식, 박재호, 김병관,
 최인호, 손혜원, 유승희,
 안규백, 박홍근, 어기구,
 윤관석, 문미옥, 오제세,
 정성호, 강병원, 박용진,
 설훈, 전해숙, 김현권,
 김경협, 신창현, 양승조,
 김현미, 황희, 김영주,
 진선미 의원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임.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 등도 TV 광고방송을 통해 대출상품을 노출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품의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9제3항).

법률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1항제3호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3. 그 밖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송출되는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제72조제1항제10호의2 중 “제50조의9제1항·제2항을”을 “제50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의9(광고) ①·② (생략)</p> <p>〈신설〉</p>	<p>제50조의9(광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1항제3호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p> <p>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p> <p>3. 그 밖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송출되는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p>
<p>③·④ (생략)</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0. (생략)</p> <p>10의2. <u>제50조의9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u></p> <p>10의3. ~ 1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2조(과태료) ①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0의2. <u>제50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u></p> <p>10의3. ~ 1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7. .
 발 의 자 : 제윤경의원
 찬 성 자 : 제윤경, 박경미, 김관영,
 박광온, 우원식, 박재호,
 김병관, 최인호, 손혜원,
 유승희, 안규백, 박홍근,
 어기구, 윤관석, 문미옥,
 오제세, 정성호, 강병원,
 박용진, 설훈, 전해숙,
 김현권, 김경협, 신창현,
 양승조, 김현미, 황희,
 김영주, 진선미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되고 분별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아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그러나 연대보증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계약과 직접 관계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음.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연대보증의 폐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화 보증의사 확인만으로 연대보증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21조제1항).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연대보증의 요구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 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 (생 략)</p> <p>〈신 설〉</p> <p>6. ~ 12.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6조의3(연대보증의 요구 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과태료)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자</p> <p>6. ~ 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